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 인증을 위한 기준고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증 세부실시 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준의 적시 개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관리와 시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고시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42조)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기존) 판매금지 → (개정) 표시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처분대상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판매금지	—	—
2)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가 법 제6조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맞지 않게 표시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표시변경	판매금지	—
3)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인증 표시를 한 경우(인증받지 않은 농산물과 인증받은 농산물이 혼합된 경우 포함)	법 제31조 제2항	표시제거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신설> 3. ~ 27.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 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 2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⑧ (현행과 같음)